##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653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7.

발 의 자: 장경태・임호선・홍성국

정청래 · 한준호 · 김남국

이워택 • 이수진 • 이성만

임오경 · 김병주 · 이용우

최혜영 · 장철민 · 김민철

오영환 • 주철현 • 신현영

의원(18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.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.

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음.

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 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 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34조 제4항).

법률 제 호

##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

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4조제4항 후단 중 "명기"를 "명확히 기록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4조(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)	제34조(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)
① ~ ③ (생 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	4
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거나 제	
3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변	
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	
과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, 대	<u>.</u>
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	
의 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	
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	
니하다.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	
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골재채	
취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외에	
는 골재채취를 할 때 준수하여	
야 할 사항 등 필요한 사항 등	
을 <u>명기</u>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	<u>명확히 기록</u>
⑤ ~ ⑦ (생 략)	⑤ ~ ⑦ (현행과 같음)